



제2843호 2022. 5. 6.(금)

www.jeonbuk.go.kr

입법예고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25호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1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26호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29호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867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20
- 전라북도 공고 제2022-883호 기부금품 처분 사용 계획 공고 21

지시사항

- 2022. 5. 2.(월)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22

시군행정

- 군산시 고시 제2022-64호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고시 23
- 익산시 공고 제2022-1415호 도시계획시설(학교/원광대)사업 공사완료 공고 24
- 익산시 공고 제2022-14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2호 외 3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25
- 정읍시 고시 제2022-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28
- 김제시 고시 제2022-47호 도시관리계획(요촌1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9
- 김제시 고시 제2022-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김제배수지 관제실 및 창고 증축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2
- 김제시 고시 제2022-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홈플러스~주공2차입구간 소로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4
- 완주군 고시 제2022-41호 군계획시설(완주 반다비 체육센터)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38

기 타

-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22-11호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40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25호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폐지이유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 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을 애도하고, 재직 기간 중 봉사 및 희생정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등 명예로운 예우와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21.12.31) 되면서 기존의 시행규칙 있던 내용을 포함하여 일원화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협의 등: 법무행정과(행정규제심사)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대상 아님
- 라. 입법예고: 2022. 5. 6. ~ 2022. 5. 26.(20일간)
- 마.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소방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전화 : 063-280-3917, FAX : 063-289-1000)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전화:
063-280-39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1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6-06-17 조례 제 301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도청장(葬)의 경우 도지사, 소방서장(葬)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장례위원회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 시부터 사전 구성할 수 있다.

⑤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청장(葬)의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葬)은 소방서장 또는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집행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지체없이 그에 상응하는 장례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단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장례비용 지원) ①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장례비용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은 관련 서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실비)비용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
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지출 세부항목 확인 가능)
3.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서 등 순직 또는 공무상 사망으로 관련기관으로부터 결정 통보를 받은 서류

제5조(장례비용 제외 대상) ① 조례 제9조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의 식사 비용
2. 노제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제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6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2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03-11 조례 제 4235호
(전부개정) 2021-12-31 조례 제 50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수행 중 순직한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등을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그 장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기본법」 제16조의 소방활동,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제17조의 소방교육·훈련, 그 외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2. “전라북도청장”이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전라북도청장(이하 “도청장”이라 한다) 이외의 유족이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장례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순직한 경우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제5조(장례의 종류) 장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청장
2. 가족장

제6조(장례 종류의 결정) ① 순직 소방공무원 등이 발생한 경우 유족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방서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방본부 소속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경우는 소방본부장이 도지사에게 제청한다.

② 유족이 도청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제7조(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청장으로 결정되면 도지사는 원활한 장례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례기간, 빈소, 영결식 장소·일시·규모 등
2. 장례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집행을 위하여 장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도지사, 부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소방정 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장례집행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장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방본부 장례집행 소관 과장이 된다.

⑥ 장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장례위원회는 장례가 마무리 되면 해산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장례위원회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례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집행위원회) ①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집행위원회 기구와 운영 기간
2. 장례의 종류 및 기간
3. 빈소 설치·운영, 영결식, 안장식 등 진행
4.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운구 계획
5. 소요자원 운영 방안

6. 그 밖에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소방본부장, 부위원장은 관서장(소방본부 소속 순직소방공무원 등의 경우는 장례집행 소관 과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장례집행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집행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장례집행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장례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장례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5천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노제, 삼우제, 사십구일제 비용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과 조성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으로 장례를 집행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은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애도기간 운영)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전라북도청 및 소속기관은 조기 계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패용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051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26호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행 '21.6.10.)됨에 따라 용어 등 개정사항 반영
- 나.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21.12.9.)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가. 「전자정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상의 용어 충돌에 따른 정비
 -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변경(안 제2조~제7조, 제10조~제12조, 제13조~제15조, 제20조)
-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적용조항 정비
 -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변경
(안 제4조 제3항 제9호, 제10조 제4항 제7호, 제12조의2 제2호, 제21조)
 - 「인터넷중독 대응센터」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로 변경(안 제2조의2)
- 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근거 명확화
 - 전자정부법에 따른 계획을 포함하여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
(안 제4조제1항·제3항제1호)
-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삭제된 규정 반영(안 제4조제4항)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시 부문계획(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 마.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저작권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 삭제(안 제5조제2항, 제17조)

바. 영문 표기를 한글 용어로 정비(안 제7조, 제 12조의2)

사.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 개정사항 반영
- ‘지식정보자원’을 ‘국가지식정보’로 용어 변경(안 제16조제1항)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정보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정보화총괄과
(전화 : 063-280-2596 FAX : 063-280-237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정보화총괄과 정보화총괄팀
(063-280-2596)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를 “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을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별 계획을 포함한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본계획은 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한다.

제4조제2항(중전의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중전의 제11호) 중 “밖에 지역정보화”를 “밖의 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1. 「전자정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 제5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법 제7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정보화”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정보통신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보화 시책”을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으로,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 중 “인터넷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정보화의 추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교육·문화 그 밖에”를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교육·문화 및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정보화”로 한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터넷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ICT관련”을 “정보통신기술 관련”으로 한다.

가. 전북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대응센터(스마트 쉼센터) 운영 및 사업

제13조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 추진”을 “정보화 추진”으로 한다.

제14조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을 “(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식정보자원을”을 “국가지식정보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터넷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0조의6”을 “법 제52조”로, “인터넷중독의”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로,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0조의8”을 “법 제54조”로, “인터넷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법 제35조”를 “법 제50조”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5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29호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법률 제명 변경('15년), 삼각농정위원회 출범('15년),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17년)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안 제2조)
- 나. 혁신위원회의 실무 논의 강화 등을 위해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4조)
- 다. 정기회 개최 시기를 매년 8월에서 매년 1회로 변경(안 제7조)
- 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종합계획(5년 주기)과 연계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주기 변경(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협의 : 감사관, 예산과,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 라. 입법예고 : 2022. 5. 6. ~ 2022. 5. 26.

4.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농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농산유통과
 (전화 : 063-280-4625, FAX : 063-280-260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담당자(063-280-46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다.
-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다.
- 5.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제3조 중 “도지사”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와 농축산식품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부지사가”를 “농축산식품국장이”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8월에”를 “1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전라북도)”를 “(종합계획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 (생 략) 3.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 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다. 6.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6.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농산물 유통 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u>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 6. (생 략)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⑤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농축산식품국장</u> ----- -----. 1. ~ 6. (현행과 같음) ③ ----- <u>농축산식품국장이</u>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생 략) ② 정기회는 매년 8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생 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u>1회</u>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전라북도) 도지사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종합계획 수립·시행) ----- ----- <u>5년</u> ----- -----.

붙임 1

관계 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칙 제13383호, 2015.6.22.)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약칭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이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미첨부 사유

- 법률의 제명 변경, 당연직 위원 변경, 정기회 개최 시기 변경, 종합계획 수립 주기 변경 등 일부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 없음

3. 작성자

- 농산유통과 지방농업주사 윤종현(063-280-4625)

전라북도 공고 제2022-867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 제4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5월 6일

- 1. 법 인 명 : 재단법인 장안정사(長安情舍)선교재단
- 2. 소 재 지 : 정읍시 관통로 99-39(시기동)
- 3. 대 표 자 : 윤 여 건
- 4. 설립목적 : 본 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기독교, 불교, 유교 등이 서로 화합하지 아니하고 반목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 정신과 불교의 대자대비의 정신, 유교 등의 도덕과 윤리적 장점을 한데 모아 서로 사랑하고 단결하여 국가 종교문화 진흥정책에 부합하고 인간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고취하여 나아가 국민의 단결과 애국 정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6. 허가번호 : 제 2003-14호
- 7. 허가연월일 : 2003년 4월 4일

전라북도 공고 제2022-883호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5월 6일

■ 공 고 사 항

1. 등록번호 : 전라북도 제2021-04호
2. 모 집 자 : (사)리턴
3. 모집목적 : 유실유기동물을 구조 보호관리 및 치료하여 입양을 보내기 위함
4. 모집기간 : 2021. 4. 1. ~ 2022. 3. 31.
5. 총모금액 : 금229,554원(금이십이만구천오백오십사원)
6. 처분·사용 사유 : 국민청원 논란 등으로 인한 모집활동 제한으로 모집목적 미달성
7. 사용계획 : 군산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도지사 지시사항

◇ 2022. 5. 2.(월)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2 -36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방안 마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1.11.19.) - 제1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개최(고용부 / ’22.2.15.) -</p> </div> <p>○ 중단 없는 필수업무* 수행으로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포함한 차질 없는 용역**추진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의 감염, 산업재해, 과로, 고용불안 등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p>* 대규모 재난(감염병·홍수·지진·산불 등)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p> <p>**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연구 용역’(6~10월)</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기업지원과 / 협조 :)</p>
	당면·현안업무	<p>○ 새 정부 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 신속 대응</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대통령직 인수위(지역균형발전 특위)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4.27.)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p> </div> <p>- 새 정부 균형발전 비전과 향후 지방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었으므로 국정과제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도가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정책 추진동향(제도·조직 개편, 법 정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 실·국 / 협조 :)</p>
	당면·현안업무	<p>○ 우리 도 백서 제작 준비 철저</p> <p>- 정부는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 백서(白書)를 온라인으로 공개(3.22.)했으며, 이에는 우리 도 방문 및 우수정책 추진 성과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음.</p> <p>- 우리 도 백서 제작 시 정부 백서에 담긴 우리 도의 정책내용과 시·군과의 연계 주요정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성과와 효과를 도민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제작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정책기획관 / 협조 : 전 실·국)</p> <hr/> <p>○ 시·군에 대한 도정의 주도적 역할 강화</p> <p>- 6. 1. 지방선거가 도래하며 일부 시·군의 현직단체장 입후보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리 도가 광역행정기관으로서 정부 공모사업 선정 및 각종 (새 정부)정책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14개 시·군을 아우르는 도정의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람.</p> <p>* (4. 29. 기준) 군산, 익산, 정읍, 진안, 무주, 장수, 고창, 부안</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 실·국 / 협조 :)</p>

군산시 고시 제2022-6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30-2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6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30-21번지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 가. 도시계획시설(금강호 유원지)사업
 - 나. 금강호 유원지(상가시설지구3-5) 상가건축공사
 - 상가시설

도면 번호	세부 시설명	세부시설 결정내용				실시계획 신청내용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3-5 (21)	상가 시설	1,105㎡	331㎡	1,105㎡	지상 4층	1,105㎡	329㎡	329㎡	지상 1층	

- 1동/1층 신축 연면적 329.02㎡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일반, 휴게음식점)

3.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가. 성명 : 백중희
 - 나. 주소 : 군산시 친변길 16, 다동 301호(경암동, 그린빌라)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당초 2018. 7. ~ 2022. 7. 31. 변경 2018. 7. ~ 2024. 7.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계제실음 생략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계제실음 생략

익산시 공고 제2022 - 1415호

익산 도시계획시설(학교/원광대학교)사업 공사완료 공고

익산 도시계획시설(학교/원광대학교)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익 산 시 장
2022년 5월 6일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가. 위 치 : 전북 익산시 신동 11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원광대학교)사업
 - 나. 명 칭 : 원광대학교 장례문화원 북측주차장, 서측주차장 및 도로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7,022㎡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학교법인 원광학원
 - 나.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신동)
-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6. 30.
- 6. 관련도서 : 실음생략.

익산시 공고 제2022-1416호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2호 외 3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2호 외 3개소)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2년 5월 6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2, 중로3-10, 중로3-62, 소로1-812)사업
- 사업의 명칭 : 남중동 공동주택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시 설 명	사업시행지 위치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비 고
대로3류2호	남중동 160-205번지 일원	• L=58m, B=25~28m, 면적=130㎡	
중로3류10호	남중동 157-10번지 일원	• L=134m, B=12~15m, 면적=455.5㎡	
중로3류62호	남중동 160-214번지 일원	• L=240m, B=14m, 면적=966.6㎡	
소로1류812호	남중동 116-17번지 일원	• L=162m, B=10m, 면적=35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아람주택 대표 서인철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02호(화정동)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6. 12.

5.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

8. 의견서 제출 :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익산시 남중동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102-34	대	2	2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2	102-35	창	26	26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3	102-36	대	1	1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4	109-36	대	10	10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5	109-37	대	44	44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6	110-6	전	23	23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7	111-25	도	9	1	국(건설부)				
8	111-26	대	1	1	박춘길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안길 12	우리신용 협동조합	익산시 인북로48길8-9	근저당
9	112-19	대	1	1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10	114-10	도	12	12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11	114-11	대	3	3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12	115-47	대	24	24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13	115-6	도	3	3	김성희 김성미 김성진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스테포드시 브릿지포트 서클46번지 미합중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케왈로 케왈로 스트리츠1643번지 아파트1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비엔나 파크시 리벨 서클 72번지			
14	116-16	대	5	5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15	116-17	대	32	32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16	116-18	대	30	30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17	116-19	대	46	46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18	116-2	답	7	7	익산시				
19	117-7	대	13	13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20	119-16	대	4	4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21	123-29	대	59	59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22	124-31	대	49	49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23	124-32	답	20	20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24	124-33	대	55	55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25	124-34	대	6	6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26	124-35	대	49	49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27	124-36	답	5	5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28	157-10	도	2,308	60	익산시				
29	157-48	대	9	9	익산시				
30	157-63	대	12	12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31	157-64	대	42	42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32	157-65	대	17	17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33	157-66	대	4	4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34	157-67	대	40	40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35	157-68	대	39	39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36	157-69	도	7	7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37	157-70	대	49	49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38	157-71	대	32	32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39	157-73	도	3	3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40	160-160	도	12	12	장순자	익산시 남중동 65-30			
41	160-166	대	1	1	익산시				
42	160-178	대	7	7	익산시				
43	160-188	대	2	2	익산시				
44	160-201	대	125	125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45	160-202	도	67	5	국(건설부)				
46	160-203	대	6	6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47	160-204	대	54	54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48	160-205	대	68	68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49	160-206	전	56	56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50	160-207	대	87	87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51	160-208	전	159	14	국 (기획재정부)				
52	160-209	전	27	27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53	160-210	대	40	40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54	160-211	대	52	52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55	160-212	대	51	51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56	160-213	대	21	21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57	160-214	도	1,758	195.1	익산시				
58	160-215	대	57	57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59	160-216	대	5	5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60	160-217	대	26	26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61	160-82	도	5	5	김용세	익산시 남중동 160-2			
62	519-97	도	534	5	국(건설부)				
63	519-98	대	44	44	국(건설부)				
64	519-99	도	6	6	국(건설부)				
65	86-299	대	57	57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66	156-2	도	7	7	이창기	익산시 남중동 157			
67	160-81	도	10	10	강순녀	익산시 남중동 160			
68	115-41	도	3	3	오정근	익산시 남중동 157-48			
69	160-181	도	5	5	김용세	익산시 남중동 160-2			
70	111-27	대	1	1	박춘길	군산시 문화안길12	우리신용 협동조합	익산시 인북로48길8-9	근저당
71	111-24	대	1	1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72	86-298	대	2	2	(주)아람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소 계			6,457	1,902.1					

정읍시 고시 제2022-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 읍 시 장
2022년 5월 6일

1. 사업명 : 정읍 북면 한교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2. 승인번호 : 1997-(전라북도)주택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1999. 3. 15.)
3. 사업위치 : 정읍시 북면 한교리 1572번지 외 5필지
4. 사업기간 : 2022. 7. 15. ~ 2023. 12. 30.
5.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개요

구 분	사업계획변경 개요		비 고
	당 초	변 경	
사업주체	㈜한교종합건설	이룸종합건설주식회사	
설계자	에지인건축사사무소 민달홍	하나그린건축사사무소 최병국	
시공자	㈜한교종합건설	주식회사이조건설	
대지위치	정읍시 북면 한교리 1572 외 5필지	변경없음	
대지면적(㎡)	28,794.00	변경없음	
건축면적(㎡)	3,992.55	변경없음	
연 면 적(㎡)	46,694.44	변경없음	
주 건축물 수(동)	6동	변경없음	
층수(층)	지상 12~15층	변경없음	
세대수	742	변경없음	· 전용면적 42.12㎡
주차대수	358	변경없음	

김제시 고시 제2022-47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요촌1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요촌1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재생과(☎063-540-39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2년 5월 6일

1.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요촌1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요촌1어린이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요촌1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요촌동576	5,558.0	-	5,558.0	전북 제125호 (91.05.03)	

-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요촌1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558.0	-	5,558.0	158.2	감)32.6	125.6	150.5	감)32.6	117.9	100.0	-	
공원 시설	소계	3,277.9	-	3,277.9	158.2	감)32.6	125.6	150.5	감)32.6	117.9	59.0	
	기반시설	1,541.6	-	1,541.6	-	-	-	-	-	-	27.8	기념비 1개소
	조경시설	71.7	-	71.7	-	-	-	-	-	-	1.3	정자 1개소 팔각정 1개소
	유희시설	323.4	-	323.4	-	-	-	-	-	-	5.8	-
	휴양시설	239.0	-	239.0	106.7	-	106.7	99.0	-	99.0	4.3	-
	운동시설	1,000.4	-	1,000.4	-	-	-	-	-	-	18.0	-
	편익시설	101.8	-	101.8	51.5	감)32.6	18.9	51.5	감)32.6	18.9	1.8	-
녹지및기타	2,280.1	-	2,280.1	-	-	-	-	-	-	41.0	-	

(2)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합계			5,558.0	-	5,558.0	158.2	감)32.6	125.6	150.5	감)32.6	117.9	-
시설소계			3,277.9	-	3,277.9	158.2	감)32.6	125.6	150.5	감)32.6	117.9	-
기 반 시 설	소계		1,541.6	-	1,541.6	-	-	-	-	-	-	-
	1-1	광장	1,206.3	-	1,206.3	-	-	-	-	-	-	-
	-	도로	335.3	-	335.3	-	-	-	-	-	-	-
조 경 시 설	소계		71.7	-	71.7	-	-	-	-	-	-	-
	2-1	정자	42.0	-	42.0	-	-	-	-	-	-	1개소
	2-2	팔각정	29.7	-	29.7	-	-	-	-	-	-	1개소
유 회 시 설	소계		323.4	-	323.4	-	-	-	-	-	-	-
	3-1	어린이놀이터	323.4	-	323.4	-	-	-	-	-	-	-
휴 양 시 설	소계		239.0	-	239.0	106.7	-	106.7	99.0	-	99.0	-
	4-1	경로당	239.0	-	239.0	106.7	-	106.7	99.0	-	99.0	1개소
운 동 시 설	소계		1,000.4	-	1,000.4	-	-	-	-	-	-	-
	5-1	농구장	640.0	-	640.0	-	-	-	-	-	-	-
	5-2	롤러스케이팅장	274.3	-	274.3	-	-	-	-	-	-	-
	5-3	체육단련장	86.1	-	86.1	-	-	-	-	-	-	-
편 익 시 설	소계		101.8	-	101.8	51.5	감)32.6	18.9	51.5	감)32.6	18.9	-
	6-1	화장실	101.8	-	101.8	51.5	감)32.6	18.9	51.5	감)32.6	18.9	1개소
녹 지 및 기 타	소 계		2,280.1	-	2,280.1	-	-	-	-	-	-	-
	녹 지		2,280.1	-	2,280.1	-	-	-	-	-	-	-

2) 공원조성계획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도로총괄표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7	127.1	335.3	-	-	-	-	-	-	7	127.1	335.3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7	127.1	335.3	-	-	-	-	-	-	7	127.1	335.3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5.5	특수 도로	11.9	대상지 경계 남측	소로3-2	산책로	-	-	-
기정	소로	3	2	2.5	특수 도로	40.9	소로3-1	소로3-3	산책로	-	-	-
기정	소로	3	3	1.4	특수 도로	29.0	기반시설 부지	기반시설 부지	산책로	-	-	-
기정	소로	3	4	5.3	특수 도로	10.5	대상지 경계 남측	기반시설 부지	산책로	-	-	-
기정	소로	3	5	2.0	특수 도로	4.7	기반시설 부지	조정시설 부지	산책로	-	-	-
기정	소로	3	6	1.5	특수 도로	20.1	기반시설 부지	기반시설 부지	산책로	-	-	-
기정	소로	3	7	3.0	특수 도로	10.0	기반시설 부지	대상지 경계 서측	산책로	-	-	-

2.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요천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계재 생략”
끝

김제시 고시 제2022-51호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김제배수지 관제실 및 창고 증축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김제배수지 관제실 및 창고 증축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 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9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2년 5월 6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제시 서암동 산2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김제배수지
 - 나. 명 칭 : 김제배수지 관제실 및 창고 증축사업
3. 사업면적 및 규모
 - 가. 부지면적 : 9,971m²
 - 나. 건축면적 : 534.651m²
 - 다. 연 면 적 : 532.971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김제시장 박준배
 - 나. 주 소 : 김제시 중앙로 40
5. 사업시행기간 : 2021. 06. 11. ~ 2022.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김제시 서암동	231	수	822	822	김제시					
2	김제시 서암동	산21-1	수	4,660	4,660	김제시					

3	김제시 서암동	산30-1	수	4,063	4,063	김제시					
4	김제시 서암동	산44-1	수	426	426	김제시					

7. 관계도서(도면) : 게재생략

김제시 고시 제2022-52호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홈플러스 ~ 주공2차입구간 소로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홈플러스 ~ 주공2차입구간 소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 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9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2년 5월 6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제시 검산동 84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김제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소로1-41호선)
 - 나. 명 칭 : 홈플러스 ~ 주공2차입구간 소로개설공사
3. 사업면적 및 규모

구 분		도로 연장 및 폭원	비고(사업시행자)
기 정	전 체	L=251m, B=10m	김제시
변 경	1구간	L=129m, B=10m	김제시
	2구간	L=122m, B=10m	우리자산신탁(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 분		성 명	주 소	비 고
기 정	전 체	김제시장 박준배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변 경	1구간	김제시장 박준배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2구간	우리자산신탁(주) 공동대표이창하,이창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5. 사업시행기간

구 분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사업시행자)
기 정	전체	2020. 6. 19	2025. 12. 31	김제시
변 경	1구간	2020. 6. 19	2025. 12. 31	김제시
	2구간	실시계획(변경) 인가일	2023. 12. 31	우리자산신탁(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
7. 관계도서(도면) : 게재생략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 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사업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주소		
									계	김제시	우리자산 신탁(주)				
	계				8,822	3,381	2,588	(증)75	2,663	1,448	1,215				
1	김제시 검산동	841- 8	841- 8	대	130	130	109	(증)6	115	115	-	김제시		없음	
2	김제시 검산동	841	841	전	468	468	468	-	468	468	-	김제시		없음	
3	김제시 검산동	845- 1	845- 1	답	157	157	157	-	157	157	-	김제시		없음	
4	김제시 검산동	846	846- 5	답	1,547	614	453	(증)11	464	464	-	전세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없음	
5	김제시 검산동	847- 45	847- 49	전	152	42	27	(증)15	42	42	-	김제시		없음	
6	김제시 검산동	847- 20	847- 46	전	322	29	29	-	29	29	-	김제시		없음	
7	김제시 검산동	847- 35	847- 47	전	383	175	137	(증)37	174	158	16	김제시		없음	
8	김제시 검산동	847- 40	847- 48	전	202	22	21	(증)1	22	3	19	김제시		없음	
9	김제시 검산동	951- 12	951- 12	도	569	569	48	-	48	12	36	국(건설부)		없음	
10	김제시 검산동	833- 11	833- 11	임	16	16	14	-	14	-	14	김제시		없음	
11	김제시 검산동	832- 7	832- 7	전	148	148	148	(감)7	141	-	141	김제시			141/148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없음	7/148
12	김제시 검산동	832- 6	832- 12	전	40	23	18	(증)5	23	-	23	김제시		없음	
13	김제시 검산동	832- 1	-	전	318	-	1	(감)1	-	-	-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없음	
14	김제시 검산동	831- 6	831- 8	전	167	31	23	(증)8	31	-	31	김제시		없음	
15	김제시 검산동	831- 5	831- 5	전	109	109	106	(감)5	101	-	101	김제시			101/109
												김영록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없음	4/109
												연제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량로	없음	4/109
16	김제시 검산동	830	830- 14	답	331	103	108	(감)5	103	-	103	김제시		없음	
17	김제시 검산동	830- 3	830- 16	답	661	165	160	(증)5	165	-	165	손세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없음	3/4
												손보람	경북 상주시 화북면	없음	1/4
18	김제시 검산동	830- 1	830- 15	답	165	30	31	(감)1	30	-	30	김제시		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사업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주소			
									계	김제시	우리자산 신탁(주)					
19	김제시 검산동	830- 10	830- 22	답	165	14	14	-	14	-	14	김제시		없음		
20	김제시 검산동	830- 8	830- 20	답	189	11	11	-	11	-	11	구보권	충북 청주시 홍덕구 운천동	없음		
21	김제시 검산동	830- 9	830- 21	답	512	22	22	-	22	-	22	김제시		없음	314/512	
												박성희	충북 청주시 홍덕구 죽림동			33/512
												이소희	충북 청주시 홍덕구 가경동			66/512
												정석영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33/512
												한성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66/512
22	김제시 검산동	830- 11	830- 23	답	165	24	22	(증)2	24	-	24	김제시		없음		
23	김제시 검산동	830- 13	830- 13	답	89	89	89	-	89	-	89	김제시		없음		
24	김제시 검산동	830- 12	830- 24	답	165	19	15	(증)4	19	-	19	김제시		없음		
25	김제시 검산동	830- 4	830- 17	답	432	16	16	-	16	-	16	김제시		없음		
26	김제시 검산동	830- 5	830- 18	답	330	15	15	-	15	-	15	김제시		없음	2/3	
												김동조	충북 청원군 내수읍	없음	1/3	
27	김제시 검산동	830- 6	830- 19	답	230	9	8	(증)1	9	-	9	김제시		없음		
28	김제시 검산동	819- 1	819- 9	답	152	43	36	(증)7	43	-	43	김제시		없음		
29	김제시 검산동	819- 5	819- 10	답	253	32	27	(증)5	32	-	32	김제시		없음		
30	김제시 검산동	819- 6	819- 6	답	255	255	255	(감)14	241	-	241	김제시		없음		
31	김제시 검산동	-	818- 5	전	-	1	-	(증)1	1	-	1	공소도리	김제시 육산동	없음	702/175 5	
												공정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구		1053/17 55	

완주군 고시 제2022-41호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완주 반다비 체육센터)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완주 반다비 체육센터)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2년 5월 6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093-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나. 명 칭 : 완주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체 육 시 설 : A=10,796㎡(전체면적 17,640㎡ 중 분할시행)
 - 나. 건축 연면적 : A=2,594.35㎡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완주군수(체육공원과장)
 - 나. 주소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나. 준공예정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따로 붙임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완주 반다미 체육센터 조성사업

구 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성 명	주 소	
1	완주	봉동	낙평	1093-5	전	946	946	완주군		
2	완주	봉동	낙평	1092	답	2,988	2,212	완주군		
3	완주	봉동	낙평	1091	답	4,252	1,357	완주군		
4	완주	봉동	낙평	1088-2	답	3,289	2,055	완주군		
5	완주	봉동	낙평	1088-1	답	2,773	2,157	완주군		
6	완주	봉동	낙평	1086	답	1,650	1,650	완주군		
7	완주	봉동	낙평	1085	전	301	301	완주군		
8	완주	봉동	낙평	1087	전	118	118	완주군		
합 계						16,317	10,796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22-11호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전라북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4.28.)에서 의결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2022. 5. 6.

1. 세입

(단위: 천 원)

구 분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비교 증감(A-B)	증감률
합 계	4,071,915,153	3,862,617,273	209,297,880	5.4%
이전수입	4,007,179,749	3,797,584,775	209,594,974	5.5%
중앙정부이전수입	3,625,877,775	3,421,027,831	204,849,944	6.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77,568,966	374,010,215	3,558,751	1.0%
기타이전수입	3,733,008	2,546,729	1,186,279	46.6%
자체수입	25,704,408	19,293,398	6,411,010	33.2%
행정활동수입	560,364	354,212	206,152	58.2%
자산수입	3,293,840	3,228,589	65,251	2.0%
이자수입	2,590,405	2,590,405	0	0.0%
기타수입	19,259,799	13,120,192	6,139,607	46.8%
기타	39,030,996	45,739,100	△6,708,104	△14.7%
전년도이월금	33,322,976	40,000,000	△6,677,024	△16.7%
금융자산회수	5,708,020	5,739,100	△31,080	△0.5%

2.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비교 증감(A-B)	증감률
합 계	4,071,915,153	3,862,617,273	209,297,880	5.4%
유아 및 초·중등교육	1,890,487,365	1,771,571,841	118,915,524	6.7%
인적자원운용	29,422,960	28,138,529	1,284,431	4.6%
교수학습활동지원	316,538,963	297,424,908	19,114,055	6.4%
교육복지	234,448,919	226,018,708	8,430,211	3.7%
보건급식	182,194,055	159,550,753	22,643,302	14.2%
학교제정지원관리	647,366,186	647,239,608	126,578	0.0%
학교시설여건개선	480,516,282	413,199,335	67,316,947	16.3%
평생교육	15,790,230	14,787,710	1,002,520	6.8%
평생교육	15,790,230	14,787,710	1,002,520	6.8%
교육일반	223,296,326	143,067,580	80,228,746	56.1%
교육행정일반	71,219,715	69,243,571	1,976,144	2.9%
기관운영	61,369,864	53,117,262	8,252,602	15.5%
재무활동	90,706,747	20,706,747	70,000,000	338.1%
예비비	27,611,098	28,071,824	△460,726	△1.6%
예비비및기타	27,611,098	28,071,824	△460,726	△1.6%
인건비	1,914,730,134	1,905,118,318	9,611,816	0.5%
인건비	1,914,730,134	1,905,118,318	9,611,816	0.5%